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85

2020년 12월 2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10.16. 정재웅 의원(찬성자 권영희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0.10.26.

다. 상정 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0년 12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안 제39조제4항, 제39조의2)

○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1항은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 제57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활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와 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대하는 윤리 기준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1)]

---

1) 일례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의회 의원이 시민들의 윤리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며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금지, 영리행위, 청렴의무 등의 자격·윤리규정 준수 및 징계 여부와 정도에 대한 심사의 엄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는 그 방편의 하나로 판단됨.

○ 다른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26일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통해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결의하면서 그 과제의 하나로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분야에서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 공개'를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제3자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장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자격·윤리·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자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의원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로 국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조례·규칙 등의 법규 제정을 통해 설치·운영하고 있음(붙임 참조).

○ 또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도 제66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판단과 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85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정재웅 의원 (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정태, 김춘례, 김호평, 송재혁, 송아량, 여명, 이호대, 추승우, 권영희 의원(10명)

1. 제안이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제4항 및 제3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도록 개정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최근 3년간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개최횟수를 예측하기 곤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32
e-mail : waterkim@seoul.go.kr